

부속서 II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태국

주해

1. 이 양허표는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른 태국의 약속을 규정한다.
2. 이 양허표의 서비스 분야 분류는 중앙상품분류(CPC) 번호의 부재에 의하여 달리 적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엔 통계사무소의 1991년 잠정 중앙상품분류 1.1버전 및 1.2버전에 근거를 둔다. 그 순서는 1991년 7월 10일자 GATT 문서 MTN.GNS/W/120에 사용된 서비스 분야별 분류 목록을 반영한다.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작성은 1993년 9월 3일자 GATT 문서 MTN.GNS/W/164 및 1993년 11월 30일자 MTN.GNS/W/164/Add. 1에 기술된 지침을 따른다.
3. 개별 CPC 코드에 대한 “\*\*”의 사용은 해당 코드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그 코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전체 범위까지 확장되지 않음을 표시한다. “약속 안함\*”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하지 않음을 말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3항 및 제4항은 “미래자유화”로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항들은 공급형태 3의 약속에만 적용된다.

5.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4항은 국가 법령, 법률, 왕국령, 또는 장관 규정과 같은 태국의 법 개정 이후 “미래자유화”로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 적용되나, 내각, 행정, 및 장관 결정 개정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제8.6조(최혜국 대우)1호가목에 따라, 태국은 제8.6조(최혜국 대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로 표시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I. 수평적 양허</b>							
이 양허에 포함된 모든 분야	(1) (2) (3) (4)	<p>이 협정에 따른 다른 당사자들의 영주권자에 대한 태국의 의무: 약속 안함.</p> <p>태국은 GATS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영주권자에 대한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통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p>	<p>(1) (2) (3)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형태 1에서 약속한 모든 분야는 태국 법 및 규정의 적용을 받음.</li> <li>- 이 제한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 및 규정의 발효 이후, 그 법과 규정의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경우, 개정됨.</li> </ul>	<p>(1) (2) (3) (4)</p> <p>이 협정에 따른 다른 당사자들의 영주권자에 대한 태국의 의무: 약속 안함.</p> <p>태국은 GATS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영주권자에 대한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통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p>			
	(1)			(3)	<p>이 양허표에 명시된 외국인(들)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유한회사 또는 법적 실체 유형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태국 법 및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해야 함.</p>		
	(3)	<p>태국 법 및 규정에 따라 태국에 설립되고 등록된 유한회사 또는 이 양허표에 명시된 법적 실체 유형만이 허용됨. 상업적 주재는 분야별 약속에 적시된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p>					
	3.1	<p>외국인 지분 참여는 분야별 구체적 약속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등록된 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외국인 주주의 수는 주주 총원의 절반</p>			<p>3.1의 경우, 태국 법 및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외국인 지분 참여가 등록된 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이 양허표</p>		

	<p>미만이어야 함.</p> <p>3.2 외국인 지분 참여는 분야별 구체적 약속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등록된 자본의 5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3.3 외국인 지분 참여는 분야별 구체적 약속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등록된 자본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3.2와 3.3의 경우 외국인(들)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이 양허표에 명시된 유한회사 또는 법적 실체 유형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태국 국민의 법인과 합작투자를 통하여 운영함.</li> <li>b. 외국인(들)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이 양허표에 명시된 법적 실체는 면허 또는 증명서를 받기 전에 관련 당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li> <li>c. 적용 가능한 태국 법과 규정에 언급된 최소자본금 요건 비율은 이 양허표에 명시된 유한회사 또는 법적 실체에 적용됨.</li> </ul>	<p>에 명시된 법적 실체: 제한 없음.</p> <p>3.2와 3.3의 경우 이 양허표에 명시된 유한회사 또는 법적 실체는 「외국인사업법(불기 2542년) (1999)」 제11절 및 「외국인 사업 증명서 신청에 관한 규칙 및 「절차를 규정한 시행 규칙(불기 2546년) (2003)」에 명시된 사업 운영 증명서를 신청해야 함.</p> <p>보조금 또는 특권, 최소 자본금 요건, 세제 조치, 토지 취득 및 사용, 그리고 국적 요건에 관한 조치는 약속 안함.</p>	
	<p>d. 유한회사 또는 법적 실체의 행정직 및 임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직책을 포함하는 이사회는 태국에 주소를 둔 태국 국민이여야 함. 그리고</p> <p>e. 면허를 신청하는 유한회사 또는 법적 실체의 인이나 대표는 태국 국민이어야 함.</p>		

	<p>이 양허표의 분야 또는 하위분야의 상업적 주재는 분야별 구체적 약속에 적시된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도 충족해야 함.</p>		<p>구체적 약속에 추가로 적시되거나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2와 「외국인사업법 (불기 2542년)(1999)」 제5절, 제7절, 제8절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그 밖의 모든 태국 법 또는 규정에 명시된 기준과 요건이 적용됨.</p>	
(4)	<p>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태국 양허표에 언급된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자연인의 입국 또는 일시 체류에 대한 조건, 제한 또는 자격을 제외하고, 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p>	(4)	<p>시장접근 열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4)	<p>자연인의 일시적 이동은 「외국인 근로 관리 비상 칙령」(불기 2560년)(2017) 및 이의 개정본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모든 관련 태국 법 또는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불허되는 외국인인 자연인의 어떠한 유형이나 범주도 포함하지 않음.</p> <p>자연인은 특정 태국 법 또는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분야나 하위분야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을 경우 노동부와 관련 당국에서 규정한 기준<sup>1</sup>을 충족함.</p>			

<sup>1</sup> 이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전액 납입자본금의 규모, 고용 창출, 외국인 투자의 범위, 수출 진흥, 기술 이전, 경영 특수성, 경제적 수요 심사 및 노동시장 수요 심사.

	<p>(3) (4)</p> <p>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획득하는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이나 법인은 이 협정에 따른 권리와 특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p> <p>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태국 당국으로부터 그 밖의 특별한 특권이나 인센티브를 받는 자연인이나 법인은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요구할 수 없음.</p>	<p>(3) (4)</p> <p>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이나 법인은 태국 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p> <p>「태국 토지법」은 자연인, 유한회사 또는 이 양허표에 명시된 법적 실체 유형에 의한 토지의 취득과 이용에 적용됨.</p>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II. 분야별 구체적 약속</b>				
<b>1. 사업 서비스</b>				
<b>A. 전문직 서비스</b>				
a) 법률 서비스  - (CPC 86111+86119+ 86120+86130+8619 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현지 법 및 규정을 제외 하고 국제 상법에만 해 당하는 문서 초안의 작 성을 위한 법률 자문 (CPC 1.1 버전: 82119 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 (CPC 86211-86213 +86219+8622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감사는 태국에서 면허를 받은 감사인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p>- 자사의 계열사의 세금신고만을 위한 부기 서비스(CPC 1.1 버전: 82220 의 일부)</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p>		
--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c) 세무 서비스:  - 자사의 계열사 피고용인의 개인별 세금 준비 및 계획 서비스(CPC 1.1 버전: 82330 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2 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d) 건축 서비스  - (CPC 86711–86714+8671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 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서비스는 태국에서 면허를 받은 건축사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e)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태국에 본사가 등록된 유한회사 또는 유한파트너쉽 또는 등록된 보통의 파트너쉽 형태이어야 허용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서비스는 태국에서 면허를 받은 엔지니어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p>(a)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p> <p><u>유한회사:</u></p> <p>(b) 이사(들)의 최소 절반 또는 상무 이사가 엔지니어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태국 국민이어야 함.</p> <p><u>유한 파트너쉽 또는 등록된 보통의 파트너쉽:</u></p> <p>(c) 메니징 파트너 또는 관리자가 태국 국민이어야 함. 그리고</p> <p>(d) 파트너(들)의 최소 절반 이상 또는 메니징 파트너 가엔지니어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태국 국민이어야 함.</p> <p>(4) (a)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b) 토목 엔지니어의 경우 약속 안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 교통 통제 시스템을 위한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1.1 버전: 8331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서비스는 태국에서 면허를 받은 엔지니어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 (CPC 86741-867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서비스는 태국에서 면허를 받은 건축사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도시계획 서비스:  체계적이고 조율된 도시 개발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한 토지 이용, 부지 선정, 관리 및 활용, 도로 체계 및 토지 서비스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CPC 1.1: 8322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2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서비스는 태국에서 면허를 받은 건축사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i) 수의료 서비스  - 가축 수의료 서비스 (CPC 버전 1.1: 9322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j)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 병원에서 제공되는 물리치료 및 의료보조 서비스의 간호 부서(CPC 1.1 버전: 9319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k) 그 밖의 전문직 서비스  - 일기예보 및 기상관측 서비스(CPC 1.1 버전: 8355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산업디자인 서비스 (CPC2.1 버전: 839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미래자유화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b>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최혜국대우
- 하드웨어 자문 서비스 (CPC 1.1 버전: 831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최혜국대우
- 소프트웨어 자문 서비스 (CPC 1.1:831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 (공중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함) (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최혜국대우
-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공중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함) (CPC 1.1 버전: 8596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d)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 - (공공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됨) (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그 밖의 컴퓨터 서비스 - 고객의 직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훈련 서비스 (CPC 849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추가자유화 요소
-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 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845)					

#### C. 연구개발 서비스

a) 자연과학 연구개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물리과학에 대한 연구 및 실험 개발(CPC 1.1 버전:81110)				
- 공학 및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 서비스(CPC 2.1 버전:811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미래자유화, 최혜국대우
b)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언어학 및 언어에 대한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CPC 1.1 버전:81240)				

공급형태: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c)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 학제간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CPC 1.1 버전:8130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D. 부동산 서비스</b>				
a) 자가 또는 임대 자산 관련 - 자가 또는 임대한 거주용 자산 관련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CPC 821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의 거주용 자산 관리 서비스(CPC 822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의 거주용 콘도미니엄 관리 서비스(CPC 1.1 버전: 72211 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b>				
c) 그 밖의 운송 장비 관련 - 자가용 차(CPC 7324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d)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 농기계, 건설 기계, 사무 기계,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에 관한 임대 및 리스 서비스(CPC 83106-83109)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 유람 및 레저용 기기에 관한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CPC 8320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F. 그 밖의 사업 서비스</b>				
a) 광고 서비스  - (CPC 87110 + 87120 + 8719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인터넷 광고 공간 판매 (수수료 기반은제외 함) (CPC 1.1 버 전:8363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 (CPC 86401-8640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c) 경영 컨설팅 서비스 - 일반 경영 컨설팅 서비스(CPC 865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a)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법률 및 감사 자문가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그 밖의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외한 운영 관리 및 공급망 관리 컨설팅 서비스(CPC 2.1 버전: 83115 + 83116**)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미래자유화
d)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 건설을 제외한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CPC 866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 (CPC 86761 + 86769)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인증 획득 목적의 제품 검사 서비스를 포함한 성분 ·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2.1 버전: 8344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미래자유화
f) 농업 · 수렵 · 임업 부수 서비스 농업 지도 자문 서비스 - 토양 정리 - 종자 생산 - 식물 보호 - 수확 - 등급화 - 포장 - 보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 토양 분석 실험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토양 조사 및 토지 이용 계획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피복 작물 종자 중식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동물 농장과 목장 관리 및 자문 서비스축우 (CPC 1.1 버전: 86121 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 임업 자문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 부수 서비스(CPC 88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국제무역 및 수출 상품 서비스(중개)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품질 분석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캔 포장 프로세스 분석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기술 서비스 - 컨설팅 - 마케팅 연구 - 품질 관리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유전 및 가스전 채굴 부수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a)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토목 엔지니어의 경우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 제 1차 및 조립금속제 품, 기계류 및 장비 제조 서비스(CPC 2.1 버전: 886 + 887)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미래자유화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l) 조사 및 경비  - 제조 공장 경보 모니터링 서비스(CPC 8730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2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m) 과학 및 기술 관련 컨설팅 서비스  - 수학자 및 통계학자로부터의 과학 컨설팅 서비스  - ISO 인증 관련 기술 컨설팅(CPC 867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2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기기의 유지 및 보수(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 기기는 포함하지 않음.)  -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의 기계류 및 기기(CPC 88620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미래자유화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 농업 · 임업 기계류, 광업 · 채석업 · 건설 기계류, 담배 제조 기계류, 무기 및 무기 체계, 농업 · 임업 · 정원 트랙터 및 제초기를 제외한 상업용 및 산업용 기계류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2.1 버전: 87156**)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 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미래자유화
o) 빌딩 청소 서비스 - 소독 및 박멸 서비스 (CPC 8740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 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p) 사진 서비스 - 항공사진을 제외한 특수 사진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 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q) 포장 서비스(CPC 8760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 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r) 출판 및 인쇄 서비스 - 신문 출판은 제외함 (CPC 884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분야 3.1 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s) 국제회의 서비스 - 참가자 2,000 명 이상의 국제회의센터(국제회의 업계 수요에 부응하여 전시홀, 회의실 2,000 석 이상의 회의장, 연회장, 최첨단 통신 및 화상회의 시설이 구비된 비즈니스센터로 구성된 건물의 개발. 국제회의센터는 또한 전시자, 참가자, 방문자를 위한 적절한 주차장, 상점, 식당 또는 카페를 제공할 것임)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 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t) 기타:  통번역 서비스(CPC 1.1 버전 8391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b>				
<b>C. 통신 서비스</b>				
<p><u>이 양허안의 약속은 다음의 일반 조건에 대한 적용을 받는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에서 통신 사업을 운영하려는 모든 법인은 「통신사업법」(불기 2544년)(2001) 제7(1)절에 따라 지정된 정부 당국들로부터 면허를 받음.</li> <li>- 면허는 태국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서비스 공급자에게만 발급됨.</li> </ul>				
공중 시내, 국내 장거리 및 국제 서비스  기본 통신 서비스 a) 유선 음성 전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 -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li> <li>(2)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 -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한 없음.</li> <li>(2) 제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경쟁보장장치, 상호 접속, 보편적 서비스, 허가 기준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규제 당국과 운영 당국의 분리, 그리고 회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련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대우를 이 양허표에 도입 할 것임.</li> </ul>	

	(3) 수평적 분야 3.2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d) 텔레스 서비스(CPC 7523**) e) 전신 서비스(CPC 7522) f) 팩시밀리 서비스(CPC 7521**+7529**)	<p>(1)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 -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p> <p>(2)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 -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p> <p>(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p> <p>(4)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약속 안함.</p>	태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경쟁보장장치, 상호 접속, 보편적 서비스, 허가 기준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규제 당국과 운영 당국의 분리, 그리고 회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련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대우를 이 양허표에 도입 할 것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g) 전용회선 서비스 - 전용망 서비스(CPC 75222)	<p>(1)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p> <p>-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p> <p>(2)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p> <p>-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p> <p>(3) (a)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b)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망을 이용해야 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태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경쟁보장장치, 상호 접속, 보편적 서비스, 허가 기준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규제 당국과 운영 당국의 분리, 그리고 회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련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대우를 이 양허표에 도입 할 것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부가 서비스:</b> h) 전자 메일(CPC 7523**)  i) 음성 메일(CPC 7523**)	(1)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 -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  (2)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 -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CPC 7523**)	<p>(1)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p> <p>-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p> <p>(2)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p> <p>-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p> <p>(3) (a)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p> <p>(b)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망을 이용해야 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태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경쟁보장장치, 상호 접속, 보편적 서비스, 허가 기준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규제 당국과 운영 당국의 분리, 그리고 회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련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대우를 이 양허표에 도입 할 것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1)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 또는 부가가치 팩시밀리 서비스(CPC 7523**)	<p>(1)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p> <p>-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p> <p>(2)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p> <p>-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p> <p>(3) (a) 수평적 분야 3.2에 기재된 바와 같음.</p> <p>(b)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망을 이용해야 함.</p> <p>(4)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p>(1)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p> <p>-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p> <p>(2)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p> <p>-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p> <p>(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p> <p>(4)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n) 공중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CPC 843의 일부, 거래 처리는 제외 함.)	<p>(1)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p> <p>-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p> <p>(2) - 트래픽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태국에서 운영되는 관문을 통하여 라우팅됨.</p> <p>- 관련 서비스 제공은 양쪽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에 의하여 합의됨.</p> <p>(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태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경쟁보장장치, 상호 접속, 보편적 서비스, 허가 기준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규제 당국과 운영 당국의 분리, 그리고 회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련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대우를 이 양허표에 도입 할 것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o) 기타: - 전기통신 단말기기 리스 서비스(CPC 75410)	(1) 허가 받은 운영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함. (2) 제한 없음. (3) (a)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 된 바와 같음. (b)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 자에 의해 운영되는 망을 이용해야 함. (4) (a)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 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토목 엔지니어의 경우 약 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함.		
- 통신 장비 판매 서비스 (CPC 75420의 일부)	(1) 허가 받은 운영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a)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 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토목 엔지니어의 경우 약 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 통신 컨설팅 서비스 (CPC 75440)	<p>(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p> <p>(2) 제한 없음.</p> <p>(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p> <p>(4) (a)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토크 엔지니어의 경우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비디오텍스트  - 전화회의	<p>(1) 서비스 제공자는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공급자가 운영하는 망을 이용해야 함.</p> <p>(2) 제한 없음.</p> <p>(3) 태국에 등록된 회사로서 외국인 지분 참여가 등록된 자본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외국 주주의 수가 회사의 주주 총수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D. 시청각 서비스</b>				
a)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  - 프로모션 또는 광고 서비스를 제외한 영화/비디오 제작 및 배급 서비스(CPC 96112**+ 9611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과학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제작 서비스(CPC 1.1 버전: 9612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 영화 상영 서비스:  - 모든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를 제외한 민간 사회실에서의 비디오 상영 서비스(CPC 96122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2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c)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CPC 9613)  -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 제작만을 위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CPC 96131**+961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음성 녹음 서비스  - 음성 녹음 제작에 한함 (모든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는 제외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E. 기타</b>				
- 전자 교육용 게임 서비스(CPC 2.1 버전: 84391 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b>				
A. 빌딩 관련 건설업(CPC 5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a)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토목 엔지니어의 경우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광산 및 산업용 공장에 대한 일반 건설 서비스 (CPC 1.1 번전: 5426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자문에 대해서만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 토목 관련 건설업(CPC 5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a)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토목 엔지니어의 경우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 항구, 수로, 댐, 관개 및 그 밖의 수상공사에 대한 일반 건설업(CPC 1.1 버전: 5423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자문에 대해서만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C. 설치 및 조립(CPC 514 + 51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a)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토목 엔지니어의 경우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설치 및 조립 조립식 건축물의 조립 및 시공 (CPC1.1 버전: 5440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자문에 대해서만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D.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사항. (4) 약속 안함.	(1) 자문에 대해서만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창유리 서비스(CPC 1.1 버전: 54710)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E. 기타:	(1) 건설부지 사전건립 (CPC 511) - 전문 공사업(CPC 515) - 빌딩의 건설 또는 철거, 또는 토목과 관련하여 운영자를 동반하는 임대 서비스(CPC 51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a)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토목 엔지니어의 경우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철거 서비스: 친환경적이고 기존의 지붕을 이용하며 폐쇄된 공간에서 내부를 해체하는 고층건물 해체 방식으로 한정 함(CPC 2.1 버전: 54310 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2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자문에 대해서만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4. 유통 서비스</b>						
A. 위탁증개인 서비스	(1) (CPC 62111-62118)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초하는 의료품 판매 (CPC 1.1 버전: 62117 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B. 도매 서비스:</b>					
- 스포츠 상품의 도매 서비스(자전거를 포함 함.) (CPC 62266)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식품가공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의약품 (CPC 2.1 버전: 6127**)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미래자유화	
<b>C. 소매 서비스</b>					
- 태국에서 설립되고 자사 브랜드로 태국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소매 서비스 (CPC 1.1 버전: 622 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D. 프랜차이징 서비스 - 그 밖의 비금융 무형 자산(CPC 8929)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 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E. 기타 - 도서, 신문, 잡지 및 문구류의 우편 주문 소매 서비스(CPC 1.1 버전: 623 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 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 5. 교육 서비스 (공교육 서비스는 제외됨.)

이 양허안의 약속은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 모든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태국에서의 고등 교육, 고용 또는 전문직 활동을 위한 입학, 등록 및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위 인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 서비스 공급자는 관할 당국에 신고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A. 초등교육서비스 (CPC 921**):  - 국제 및 국내 학교 교육 서비스(CPC 9219)	(1)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의 대표자인 인은 태국 국민 이어야 함.  (b) 학교 기관장과 부기관장 은 태국 국민이어야 함.  (c) 학교 관리자 또는 운영관 리자는 태국 국민이어야 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B. 중등 교육 서비스 (CPC 92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중등 교육 서비스 (CPC 9221)</li> <li>- 고등 중등 교육 서비스 (CPC 9222)</li> <li>- 기술 및 직업 교육 서비스(CPC 9223)</li> <li>- 장애학생을 위한 기술 및 직업 교육 서비스 (CPC 9224)</li> </ul>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수평적 분야 3.1 에 기재된 바와 같음.</p> <p>(4)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의 대표자인 인은 태국 국민이어야 함. (b) 학교 기관장과 부기관장은 태국 국민이어야 함. (c) 학교 관리자 또는 운영관리자는 태국 국민이어야 함.</p> <p>(4) 약속 안함.</p>			
<b>C. 고등 교육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 기술 및 직업 교육 서비스(CPC 9231)</li> </ul>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수평적 분야 3.1 에 기재된 바와 같음. (b) 이사(들)의 최소 절반,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상무이사가 태국 국민이어야 함.</p> <p>(4)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의 대표자인 인은 태국 국민이어야 함. (b) 학교 기관장과 부기관장은 태국 국민이어야 함. (c) 학교 관리자 또는 운영관리자는 태국 국민이어야 함.</p> <p>(4)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분야 및 하위분야	2) 해외 소비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3) 상업적 주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4) 자연인의 주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 과학기술 및 혁신 학부 (영어로 진행됨)(CPC 9239 의 일부)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인 지분 참여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p> <p>(1) 면허나 증명서를 취득하기 전, 외국인(들)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적 실체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그리고</p> <p>(2) 적용 가능한 태국 법과 규정에 언급된 최소자본금 요건 비율은 다른 당사자의 유한회사 또는 법적 실체에 적용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대학 위원회 구성원의 최소한 절반이 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는 「사립고등교육기관법」(불기 2546 년)(2003)을 준수해야 함.</p>		최혜국대우
- 그 밖의 고등 교육 서비스(영어로 진행됨)(CPC 9239)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수평적 분야 3.2 에 기재된 바와 같음.</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대학 위원회 구성원의 최소한 절반이 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는 사립고등교육기관법」(불기 2546 년)(2003)을 준수해야 함.</p>		
		<p>(4) 약속 안함.</p>	<p>(4)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D. 성인 교육 서비스  - 전문 및/또는 단기과정 교육 서비스(CPC 9240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의 대표자인 인은 태국 국민이어야 함.  (b) 학교 기관장과 부기관장은 태국 국민이어야 함.  (c) 학교 관리자 또는 운영관리자는 태국 국민이어야 함.  (4) 약속 안함.		
E. 그 밖의 교육 서비스(CPC 92900)  - 외국어 교습 서비스 (CPC 9290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a)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b) 이사들의 최소 절반,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상무이사가 태국 국적자이어야 함.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의 대표자인 인은 태국 국민이어야 함.  (b) 학교 기관장과 부기관장은 태국 국민이어야 함.  (c) 학교 관리자 또는 운영관리자는 태국 국민이어야 함.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6. 환경 서비스</b>				
A. 하수 서비스  - 하수 시스템, 폐기물 처리, 유해 폐기물 관리, 대기 오염 및 소음 관리, 위생 및 그 밖의 환경 관리 서비스에 관한 환경 자문(CPC 94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환경 보호 및 환경 저감 서비스(CPC 94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하수 서비스(산업 폐수 처리 시스템을 포함 함)(CPC 94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 (유해 폐기물 관리 및 소각로를 포함함)(CPC 940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2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유해 폐기물 처리 및 처분 서비스(CPC 1.1 버전:942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C.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2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해변 청소 서비스 및 배수구 막힘 제거 서비스 (CPC 1.1 버전: 9439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D. 기타  - 배기ガ스 정화 서비스 (산업 배출 저감을 포함 함) (CPC 9404) - 소음저감 서비스(CPC 9405) -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CPC 9406) -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CPC 9409)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2 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환경 자문 서비스에 대하여만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7. 금융 서비스</b>						
<b>금융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수평적 양허</b>						
<b>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및 하위분야</b>	<p>(1) (2) (3) 제공 가능한 금융 서비스의 유형과 운영 범위에 관하여, 각 유형의 금융기관은 각각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분야 또는 하위분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임.</p> <p>(3) 대표사무소와 지점을 제외하고, 이 양허표상의 금융 서비스의 상업적 주재는 태국에 등록된 유한회사 또는 공개유한회사를 통해서만 허용됨.</p> <p>이 양허표상의 금융 서비스의 상업적 주재는 「외국인사업법」 및 관련 태국 법과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함.</p> <p>이 구체적 약속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 지분 참여는 등록된 자본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태국 양허표에 언급된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한 조건, 제한 또는 자격을 제외하고, 자연인의 일시 이동</p>	<p>(1) (2) (3) 제공 가능한 금융 서비스의 유형과 운영 범위에 관하여, 각 유형의 금융기관은 각각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분야 또는 하위분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임.</p> <p>(3) 태국 법과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외국인 지분 참여가 등록된 자본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상업적 실체: 제한 없음.</p> <p>외국인(들)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상업적 주재는 「외국인사업법」을 포함하는 관련 법 및 규정에 명시된 특정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p> <p>기타: 보조금을 포함하여 약속 안함.</p>	<p>(4) 시장접근 열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3)(4)	토지의 취득 및 이용  「태국 토지법」에 따라, 외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국내 기 업은 태국 내 토지 구매 또는 소유 가 허용되지 않음. 단, 토지를 임차 하고 건물을 소유할 수 있음.	(3)(4)	토지의 취득 및 이용  「태국 토지법」에 따라, 외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국내 기 업은 태국 내 토지 구매 또는 소유가 허용되지 않음. 단, 토지를 임차하고 건물을 소유할 수 있음.

공급형태: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A. 재보험 및 재재보험을 포함하는 보험</b>				
a) 생명보험 서비스(CPC 81211)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외국인 지분 참여는 등록된 주식자본의 25퍼센트로 제한됨.            (b) 신규 설립은 내각의 동의를 받아 장관이 승인하는 허가의 대상이 됨.</p> <p>(4) 보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고위 관리직, 전문가 및 기술사원에 한정함.</p>	<p>(1) 제한 없음.</p> <p>(2) 생명보험 보험료는 지역 회사가 발급한 보험증권 소지자에 대하여 일정액 한도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부분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 손해보험 서비스(CPC 8129)	<p>(1) 국제 해상, 항공, 수송 및 모든 재보험 상품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a) 외국인 지분 참여는 등록된 주식 자본의 25 퍼센트로 제한됨. (b) 신규 설립은 내각의 동의를 받아 장관이 승인하는 협약의 대상이 됨.</p> <p>(4) 보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고위 관리직, 전문가 및 기술사원에 한정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d) 보험 부수 서비스(연금 조성 서비스는 제외함) 보험 중개 및 대리업 서비스(CPC 81401) - 중개사는 재보험 계약을 제외하고, 어떤 인이 해외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 자문 또는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음.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외국인 지분 참여는 25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4) (a) 보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고위 관리직, 전문가 및 기술사원에 한정함. (b) 개인 중개사와 대리인은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외국인 지분 참여가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 보험 자문 서비스(CPC 8140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보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고위 관리직, 전문가 및 기술 사원에 한정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 참여가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해손 및 손해 사정 서비스(CPC 814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보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고위 관리직, 전문가 및 기술 사원에 한정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 참여가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계리 서비스(CPC 8140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보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고위 관리직, 전문가 및 기술 사원에 한정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 참여가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b>				
a.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1) 금융 자문 및 금융 데이터 프로세싱은 제한 없음. 그 밖의 모든 서비스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b. 소비자대출, 주택담보 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2) 금융 자문 및 금융 데이터 프로세싱은 제한 없음. 그 밖의 모든 서비스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c. 금융리스	(3) (a) <u>은행의 대표사무소</u> : 제한 없음. (b) <u>외국 은행 지점</u> : I. 현재의 주식보유구조를 유지하는 기존의 외국 은행 지점은 제한 없음. 신규 설립은 내각의 동의와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허가의 대상이 됨. II. 다음 조건하에서만 자동금전출납기(ATM) 운영이 허용됨. i) 태국 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자동금전출납기 공동연합 가입, 또는 ii) 자사 사업장 내 운영 또는 태국의 다른 상업은행과 시	(3) (a) <u>은행의 대표사무소</u> : 제한 없음. (b) <u>외국 은행 지점</u> : 제한 없음.		
d.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e. 보증 및 약정				
f.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A) 단기금융상품 (B) 외환 (C) 환율 및 이자율 상품 (D) 양도성 증권				

<p>g.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 (공모 또는 사모)와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sup>2</sup></p> <p>i. 다음의 자산 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li> <li>- 집합투자 운용</li> <li>- 수탁 및 예탁 서비스</li> </ul> <p>k.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sup>3</sup></p> <p>l.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p>	<p>설 공유</p> <p>III. 외국 은행은 최대 세 개의 서비스 지점 영업이 허용됨.</p> <p>IV. 수표 결제 및 청산 시스템 참여는 제한 없음.</p> <p>(c) <u>현지에서 설립된 은행</u></p> <p>I. 시장접근은 기준 은행 주식의 취득으로 제한됨.</p> <p>II. (i) 최대 외국인 지분 참여는 납입 등록 자본의 25 퍼센트로 제한됨. 한 개인과 그의 관련인들이 공동으로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 등록 자본의 5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ii) 태국중앙은행의 추천이 있을 경우 재무부장관은 다음을 포함하여 재무부장관이 발표하는 조건에 따라, 최대 외국인 지분</p>	
--	--	--

<sup>2</sup> 이 하위분야에 속하는 증권회사에 대한 약속은 아래에 별도로 기재된다.

<sup>3</sup> 이 하위분야에 속하는 증권회사의 투자 자문에 대한 약속은 아래에 별도로 기재된다.

참여 및 개인과 그의  
관련인들의 공동 주식  
보유에 대하여 위에 언  
급된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

- 상업은행의 여건  
또는 영업 활동 개  
선을 위하여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 그러한 지분 참여  
가 최대 10년까지  
의 기간 동안 허가  
되며, 이 기간 동안  
진출한 외국인 투  
자자는 그들의 지  
분 보유 절대액에  
대하여 그 후로 규  
정의 적용에서 제  
외됨

III. 이사의 최소 4 분의 3  
은 태국 국민이어야  
함. 태국중앙은행의  
추천이 있을 경우, 상  
기 II(ii)에 기술된 것  
과 같은 조건을 전제  
로 재무부장관은 상기  
명시된 것보다 더 많  
은 외국 국민을 허용  
할 수 있음.

	<p>(d) <u>금융 리스 서비스</u> 최대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의 49 퍼 센트 조건인 리스 회사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 음.</p> <p>(e) <u>팩토링 서비스</u> 최대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의 49 퍼 센트 조건인 팩토링 회사 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음.</p> <p>(f) <u>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u>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는 최대 외국인 지분 참 여가 납입 등록 자본의 49 퍼센트 조건인 회사 또는 현지에서 설립된 은 행 및 외국 은행 지점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음.</p> <p>d), e), f)에 따른 사업 수행 은 허가 및 향후 발표될 규정 의 대상이 될 것임.</p> <p>(4)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외국 은행 사무소별 외국인 직원 수에 관한 제한 규정 : (a) 대표사무소로 운영 중인 은행의 경우 2 인 (b) 각 외국 은행 지점당 6 인</p>	<p>(d) <u>금융 리스 서비스</u>: 제한 없음.</p> <p>(e) <u>팩토링 서비스</u>: 제한 없 음.</p> <p>(f) <u>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u>: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부분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	---	--	--

<p>증권회사<sup>4</sup></p> <p>- 증권 중개 및 취급</p> <p>다음을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p> <p>(E) 양도성 증권</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다음 외에는 약속 안함. I. 대표사무소: 제한 없음. II. 시장접근은 기존 회사의 지분 취득으로만 제한됨.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약 속 안함. III. 허가 받은 증권회사의 경 우: 외국인 지분 참여는 납 입 등록 자본의 100 퍼센 트까지 허용될 수 있음. IV.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증권회사의 경우, 이사의 절반이 태국 국민이어야 함. V.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의 50 퍼센트 또 는 그 이상인 증권회사의 경우, 외국 국민인 경영이 사와 집행이사는 매년 60 일 이상을 태국에 체류해 야 함.</p> <p>(4) 대표사무소의 경우 2 인 외에 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	---	--	--	--

<sup>4</sup>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증권회사” 는 상업은행 및 보험사가 아닌 증권회사를 말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p>증권회사</p> <p>- 증권인수</p> <p>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 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다음 외에는 약속 안함. I. 대표사무소: 제한 없음. II. 시장접근은 기존 회사의 지분 취득으로만 제한됨.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약 속 안함. III. 허가 받은 증권회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 참여는 납입 등록 자본의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수 있음. IV.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증권회사의 경우, 이사의 절반이 태국 국민이어야 함. V.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의 50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인 증권회사의 경우, 외국 국민인 경영이사와 집행이사는 매년 60 일 이상을 태국에 체류해야 함.</p> <p>(4) 대표사무소의 경우 2 인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증권회사 - 투자 자문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I. 대표사무소의 경우 제한 없음. II. 면허는 태국법에 따라 허가 받은 금융기관과 신설된 유한회사 또는 공개유한회사에 발급될 수 있음. III. 허가 받은 증권회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 참여는 납입 등록 자본의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수 있음. IV.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증권회사의 경우, 이사의 절반이 태국 국민이어야 함. V.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의 50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인 증권회사의 경우, 외국 국민인 경영이사와 집행이사는 매년 60 일 이상을 태국에 체류해야 함.</p> <p>(4) 대표사무소의 경우 2 인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자산운용회사 - 집합투자기구</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I. 대표사무소의 경우 제한 없음.  II. 시장접근은 기존 회사의 지분 취득으로만 제한됨.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최대 외국인 지분 참여는 납입 등록 자본의 100 퍼센트까지 허용됨. 단, 허가가 부여된 후 첫 5년 동안, 자산운용회사의 납입 등록 자본의 최소 50 퍼센트는 태국 법과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sup>5</sup>이 보유하여야만 함.  IV.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이사의 절반이 태국 국민이어야 함.  V.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의 50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인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외국 국민인 경영이사와 집행이사는 매년 60 일 이상을 태국에 체류</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p>		
----------------------------	---	---	--	--

<sup>5</sup>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태국 법과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증권회사, 상업은행, 생명보험사, 그리고 특정 태국 법과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문 금융 기관을 말한다.

	<p>해야 함.</p> <p>(4) 대표사무소의 경우, 외국인 직원의 수가 2인으로 제한됨.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그 밖의 부수 금융 서비스</b>				
신용 카드 서비스(CPC 81133)  (금융법에 따라 허가 받지 않은 한, 공공으로부터의 자금 동원은 금지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범주 B에 따른 상기 (3)(f)(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에 기재된 바와 같음.  (b) 금융기관은 태국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 참여가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금융 차문 서비스(CPC 813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 참여가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8.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b>				
<b>A. 병원 서비스</b>  민간병원에서 제공하는 전문 의료 서비스(CPC 1.1 버전: 93122**)  이 하위 분류는 다음을 포함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 학과, 및 정신의학과 상 담 서비스</li> <li>- 외과적 상담 서비스</li> <li>- 의료 영상(엑스레이, 심 전도, 내시경 등) 분석 및 해석</li> <li>- 이 하위 분류는 의학 실 험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CPC 93199 참조</li> </ul>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B. 그 밖의 보건의료 서비스</b>  (CPC 1.1버전: 93199**) 비입원 체류를 제외한, 병원 서비스 외의 거주형 보건 시설 서비스(CPC 1.1 버전: 9319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인 은 태국에 거소를 가지고 있어야 함. 하나의 허가로 입원 요양원 한 곳만 운영 할 수 있음. 이 조치는 외 국인과 태국 국민 모두에 게 적용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C. 사회 서비스  장애인 대상 탁아 서비스 (CPC 1.1 버전: 9332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D. 기타  엑스레이, 초음파 또는 자기 공명영상(MRI)과 같은 분석 또는 해석이 배제된 진단 영상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b>						
A. 호텔 및 레스토랑  - 호텔 숙박 서비스(CPC 64110) - 캠핑 및 이동주택 야영지 서비스(CPC 64195) - 레스토랑 서비스(CPC 64210) - 케이터링 (CPC 6423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 (CPC 7471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a)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b) 회사 이사회의 최소 절반이 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미래자유화
D. 기타  호텔 경영 서비스(CPC 1.1 버전: 63110 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b>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놀이공원(CPC 1.1 버전: 9691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p>공연예술 및 그 밖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행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및 프로모션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예술 행사 프로모션 및 조직 서비스(CPC 2.1 버전: 96210)</li> <li>- 공연예술 행사 제작 및 프레젠테이션 서비스 (CPC 2.1 버전: 96220)</li> <li>- 공연예술 시설 운영 서 비스(CPC 2.1 버전: 96230)</li> <li>- 그 밖의 공연예술 및 라 이브 엔터테인먼트 서비 스(CPC 2.1 버전: 96290)</li> <li>- 공연예술가의 서비스 (CPC 2.1 버전: 96310)</li> </ul>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p>		
<p>B. 뉴스제공 서비스</p> <p>사진 공급 서비스(CPC 96212)</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C.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사설 도서관 서비스(CPC 9631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스포츠 서비스  (CPC 96419에 명시된 그 밖의 스포츠 서비스는 제외됨)(CPC 96411 + 96412 + 9641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CPC 9649**)  레크리에이션 파크 및 해변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11. 운송 서비스</b>					
<b>A. 해상운송 서비스</b>					
a) 승객 운송  - (CPC 7211, 연안운송 제외: 아래 참조 문서 3.1에 정의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태국 국적 선박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 립은 약속 안함.  (b) 지점 사업소 외에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아래 참조 문서 3.2에 정의 됨) 제공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수 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a) 선박의 승무원: 약속 안 함.  (b) 그 밖의 인력: 수평적 분 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약속 안함.  (b)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약속 안함.  (b)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 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정부 또는 공기업에 의하 여 제공되는 다음의 항구 에서의 서비스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국제 해상 운송 공급자가 이용 가능함.  1. 도선 <sup>6</sup> 2. 예선 지원 3.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 트 폐기물 처리 5. 선석배정 6. 항행원조 7. 선박 운영, 급수 및 전 기 공급에 필수적인 육 상기반 운영 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 안 서비스 10. 내륙 운송 서비스(내 륙 수로 운송 서비스, 철도 운송 서비스 및 도 로 운송 서비스)	

<sup>6</sup> 특정 의무 도선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태국 선박의 태국 선장은 해당 지역에서의 선박 도선이 허용될 수 있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 2) 해외 소비

### 3) 상업적 주제

####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 화물 운송(CPC 7212  - 연안운송 제외: 아래 3.1에 정의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태국 국적 선박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은 약속 안함.  (b) 지점 사업소 외에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아래 참조 문서 3.2에 정의됨)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약속 안함.  (b) (i) 태국 국적 선박을 소유한 태국 해운회사의 주주들에게는 그러한 회사들이 납부하는 배당금에 과세 가능한 소득세 면제 또는 세율 인하가 부여될 수 있음.  (ii) 태국 국적 선박에 의하여 태국으로부터 또는 태국으로의 상품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소득세 계산의 목적상, 자신의 순수입에서 화물의 가치 및 그러한 상품의 통상적인 이동 과정에서 지불하는 그 밖의 비용의 최대 50 퍼센트까지 특별 공제하는 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	(1) 아래 참조 문서 참조  (3) (b) 아래 참조 문서 참조	

	약속 안함.	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선박의 정비 및 수리  - DWT 100,000 톤 초과 (CPC 8868 의 일부)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수평적 분야 3.3 에 기재된 바와 같음.</p> <p>(4)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e) 국제 예인(CPC 7214)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태국 국적 선박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은 약속 안함.            (b) 지점 사업소 외에 국제 예인 서비스(아래 참조 문서 3.2에 정의됨) 제공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p> <p>(4) (a) 선박의 승무원: 약속 안함.            (b) 그 밖의 인력: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약속 안함.            (b) 제한 없음.</p> <p>(4) (a) 약속 안함.            (b)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f) 해상 운송 지원 서비스(CPC 745**)  - 해안 수용시설(선박 폐기물 또는 유수 수집)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C. 항공 운송</b>						
d)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CPC 8868)  - 항공기(시행규칙에 따라 면제된 대상 외에 대기에서 반동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미래자유화

공급형태: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항공기 장치(엔진, 프로펠러 및 기술위원회에서 지정한 그 밖의 항공기 장치)</li> <li>- 기술표준품 표준서 품목(TSO 품목)(항공기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 또는 부착 여부에 관계 없이 비행 중인 항공기의 조종 또는 제어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의 기기, 메커니즘, 부품, 장비 및 구성품)</li> <li>- 부품(기체, 기체 부품 또는 주요 항공기 장치 부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li>(3) 수평적 분야 3.2에 기재된 바와 같음.</li> <li>(4) 약속 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li>(3) 제한 없음.</li> <li>(4) 약속 안함.</li> </ul>		
e) 항공 운송 지원서비스(CPC 7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li>(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li> <li>(4) 약속 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li>(3) 제한 없음.</li> <li>(4) 약속 안함.</li> </ul>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E. 철도 운송 서비스</b>				
d)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의 철도 운송 장비의 정비 및 수리 (CPC 8868)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a)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토목 엔지니어의 경우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철도 운송 서비스 지원서비스 (CPC 743**)  - 여객 및 화물 차량 청소 서비스  - 철도역 경비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F. 도로 운송 서비스(그 밖의 부정기 승객 운송)</b>				
b) 화물 운송  - 냉동품 또는 냉장품, 액체 또는 가스화물, 컨테이너 화물에 한함(CPC 71231-7123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회사 이사회의 최소 절반이 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분야 및 하위분야	2) 해외 소비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3) 상업적 주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4) 자연인의 주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c) 운영자를 동반하는 상용자동차 임대	(1) 운영자를 동반하는 상용자동차 임대  - 운영자를 동반하는 승용자동차 임대 서비스 (CPC 712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회사 이사회 의 최소 절반이 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운영자를 동반하는 버스 및 대형버스 임대 서비스(CPC 7122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회사 이사회 의 최소 절반이 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도로 운송 장비의 정비 및 수리: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자동차 긴급 도로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추가자유화 요소
<b>H. 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b>				
a)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 민간 소유 항구에서의 서비스(아래 참조 문서 3.6에 정의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창고업 서비스(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1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냉동품 또는 냉장품 창고업 서비스(CPC 7421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분야 3.3에 기재된 바와 같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참조 문서

### 양허표 주석

1. 도로, 철도, 내륙 수로와 관련 부수 서비스가 이 양허표에 달리 완전하게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복합운송사업자는 화물 내륙운송을 위하여 트럭, 철도 차량 또는 바지선 및 관련 장비를 임차 또는 리스할 수 있거나, 복합운송사업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러한 형태의 복합 활동에 접근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다.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이란 복합운송사업을 위하여, 더 늦은 날에 입항한 다른 상품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복합운송사업자가 그의 상품을 시의적절하게 운송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말한다.
3. 이 양허표의 목적상:
  - 3.1 연안운송이란 태국 해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장소와 태국 해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장소 간 여객 또는 상품의 운송이나 예인을 말한다.
  - 3.2 국제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체는 다른 당사자들의 국제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자가 현지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a) 견적부터 송장작성까지 고객과 직접 연락을 통한 해상운송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활동으로서 서비스 공급자 자체에 의하여 운영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
    - (b) 통합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자체 조달
    - (c) 운송 서류, 고객 서류, 또는 운송상품의 원산지 및 특성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에 대한 문서상의 준비
    - (d) 모든 사업체 설립 조성(기업주식에의 참여를 포함한다)과 현지에 설립된 해운 대리점을 위하여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에 대한 임명: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바와 같음.
  - 3.3 복합운송사업자란 선하증권이나 복합운송서류, 또는 상품에 대한 복합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그 밖의 모든 서류 발행의 당사자로서 그 운송계약에 따른 상품의 운송에 책임이 있는 인을 말한다.

- 3.4 **화물운송주선 서비스**란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조달, 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적자를 대신하여 선적 업무를 편성 및 점검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 3.5 **통관 서비스**란 이 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화물의 수입, 수출 또는 운송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 3.6 **해상화물취급 서비스**란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역회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항만인력단이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운영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항만노무자의 직접적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 (a) 선박으로의 또는 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 또는 하역
  - (b) 화물의 고정 또는 분리
  - (c) 선적 전이나 하역 후 화물의 인수 또는 인도, 그리고 보호
- 3.7 **해운대리업 서비스**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으로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의 영업상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 (a) 견적부터 송장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과 판매 및 해운선사의 선하증권의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의 조달 및 재판매, 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의 제공
  - (b) 필요한 때에 해운선사를 대신하여 선박 기항 편성 또는 화물 접수